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1
----------	-----

2011년 6월 30일  
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6월 7일, 오봉수·주찬식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1년 6월30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봉수 의원)

#####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서울시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따른 일시적 '자문 또는 협의 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활성화계획 수립 항목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010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비율을 확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격년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항목에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일시적인 자문 또는 협의 기구 구성·운영을 의무화 함.(안 제4조제3항)
-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토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을 공사금액의 현행 100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5조제2항)
-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8조)

##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 제안배경 및 사유

- 본 안건은 2010년 6월 7일 오봉수·주찬식 의원 외 16명이 발의하여 2010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동 조례의 경우 2010년 7월 15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5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 시행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나 현재 서울시가 조례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에 의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이해당사자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사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 조례를 통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

■ 주요 내용별 검토결과

가. 활성화계획 수립의 1년 단위를 격년 단위로 현실화(안 제4조제1항)

- 현행 조례는 다음연도 활성화계획 수립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수립이 매년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립된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한 실행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실행과정에서 피드백(feedback)을 통한 보완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1년 단위가 아닌 격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활성화계획의 보다 충분한 실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제고와 이를 토대로 보다 내실 있는 차기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활성화계획에 시장이 추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포함

(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 활성화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 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도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 현행 활성화계획에는 “전년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 최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 (2011.2)”과 같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시행 이후 지역건설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계획 수립에 자칫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다. 일시적 자문 또는 협의기구 구성·운영의 의무화 (안 제4조제3항, 제4항)**

- 현행규정은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일시적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
-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자문 또는 협의위원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활성화계획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일시적 자문 또는 협의기구 구성·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라. 공동수급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확대 (안 제5조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을 공동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시, 현행 조례의 경우, 관내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100분의 49까지 건설업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규정한 것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  
나.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2010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최소시공참여비율을 100분의 49까지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 소재 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안 제8조)**

- 조례 제8조는 시장이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sup>2)</sup>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 2007년 3월 이전만하더라도 실적공사비 제외대상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후 예산절감의 강력한 수단으로 실적공사비가 각광 받으면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였다가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11년 1월부터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음.
- 실적공사비 적용은 기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산정에 비해 공사 추정가격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주청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나 반대로 중소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가격이 예산절감분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실행예산에도 못 미치는 경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 공사의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

- 더욱이 실적공사비 단가 산출이, 대부분 과거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공종별 계약 단가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구체적인 보정 없이 적용할 경우 현실성 없는 공사원가가 산출 될 수 있어 실적공사비 단가의 합리적인 보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의 속도 조절과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음.
-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붙임]참조)을 살펴보면 2~4년 전만 해도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였으나, 지금은 80% 이상인 13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대부분 개정한 상태로, 서울시 역시 타 광역자치단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형평성 있는 실적공사비 적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동 개정안대로 실적공사비 제외대상을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동 조례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붙임] 광역자치단체별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현황

[붙임]

광역자치단체별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현황

(’11.3.14 현재)

적용대상공사	광역자치단체(최종변동월)	비고
100억원 이상	부산(’10.4), 대구(’11.1), 광주(’10.10), 대전(’10.1), 울산(’10.10), 경기(’10.12), 강원(’09.3), 충북(’10.2), 충남(’10.8), 전남(’05.1), 경북(’11.1), 경남(’10.7), 제주(’05.1)	13개
70억원 이상	인천(’07.1), 전북(’11.3)	2개
50억원 이상	서울(’11.1)	1개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금액 기준 개선 현황

- 서울 : (당초)10억원 → (개선) 50억이상(’10.7개정, ’11.1시행)
- 전북 : (당초)40억원 → (개선)70억이상(’11.3.14)
- 대구 : (당초)30억원 → (개선)100억이상(’11.1.24)
- 경북 : (당초)70억원 → (개선)100억이상(’11.1.1)
- 경기 : (당초) 5억원 → (개선)100억이상(’10.12.21)
- 광주 : (당초)70억원 → (개선)100억이상(’10.10.25)
- 울산 : (당초)50억원 → (개선)100억이상(’10.10.1)
- 충남 : (당초)50억원 → (개선)100억이상(’10.8)
- 경남 : (당초)50억원 → (개선)100억이상(’10.7)
- 부산 : (당초)70억원 → (개선)100억이상(’10.4)
- 충북 : (당초)70억원 → (개선)100억이상(’10.2)
- 대전 : (당초)70억원 → (개선)100억이상(’10.1)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활성화 계획 수립)”을“(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를 “격년 단위로 12월31일까지 차기”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로 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제4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공동계약 권장)”을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

제8조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활성화 계획 수립)</p> <p>① 서울특별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1.~2.(생략)</p> <p>3. 전년도 활성화 계획의 평가결과</p> <p>4.~5.(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p> <p>① ----- -- <u>적년 단위로 12월31일까지 차기</u> ----- ----- -----.</p> <p>② 1.~2.(현행과 같음)</p> <p>3. 바로 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p> <p>4.~5.(현행과 같음)</p> <p>6.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p> <p>7. ----- ----- -----</p> <p>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p>

④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계약 권장)

① (생략)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0분의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생략)

<<부칙신설>>

하여야 한다.

⑤ -----  
-----  
-----.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  
-----  
-----100억원-----  
-----

----- . 다만, -----  
-----.

1.~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